

【붙임3】 반별 조치계획(예시)

긴급생활안전지원반[주민생활지원과]

□ 「강북구 구호센터」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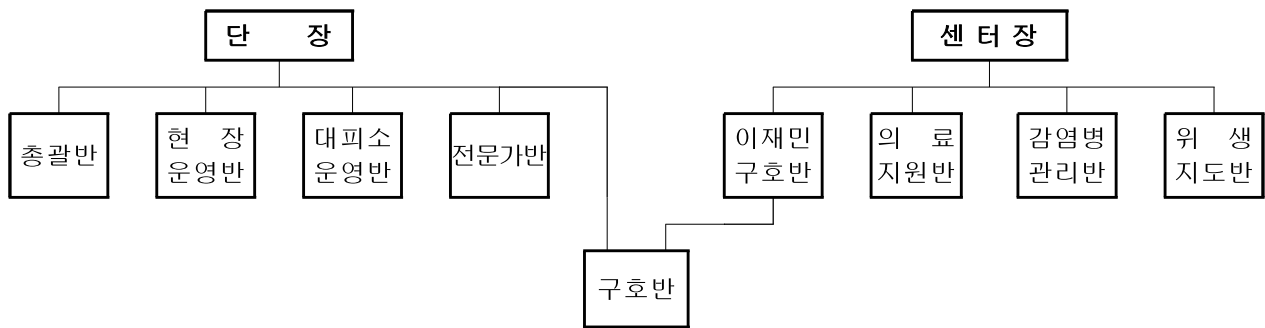
- 「강북구 구호센터」 실무반 근무자 14명 비상소집
- “이재민구호반”, “의료지원반”, “감염병관리반”, “위생지도반” 등 각 실무반 운영
- 각 실무반별 임무 부여



- 강북구 지역자율방재단 “구호반” 비상소집 및 현장대응 활동 실시

(지역자율방재단)

(지역구호센터)



□ 각종 상황 유지관리 및 보고

- 보고기관 : 서울시, 국민안전처
- 보고내용 : 이재민 발생 및 수용 현황, 이재민 응급구호 현황, 재해구호 기금·의연금 등 집행현황
- 보고방법 : ‘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’ 을 통하여 보고

□ 유관기관 및 민간구호 단체 지원 요청

- 강북소방서, 강북경찰서, 220연대 2대대 등 유관기관에 구호장비·인력 지원 요청
-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재해구호 물품 추가 지원 요청
-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이재민 구호물품 및 이재민 구호 인력 지원 요청
- 노원구, 성북구에 재해구호 물품 및 이재민 구호 인력 지원 요청
-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재해구호 물품 지원 요청

□ 재해구호 물자 지원

- 주택이 파손된 이재민에게 세대별로 취사구호물품 1세트씩 지원
- 주택 반파이상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에게 응급구호물품을 개인당 `1세트씩 지원
- “롯데마트 삼양점” , “롯데수퍼 수유점” , “강북시장내 G 마트”

- 등 구호물품 사전구매업체에서 각종 생활필수품을 우선 구매 후 이재민 지원
- 기획예산과에 재해구호를 위한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

□ 임시주거시설 지원

- 재해발생 지역 인근 “번동중학교”, “번동초등학교”, “오현초등학교” 에 이재민 분산 수용
- 임시주거시설 내 급수시설과 화장실, 목욕시설 등 이용 조치
- 번동중학교, 번동초등학교, 오현초등학교에 화장실 및 간이 목욕시설 추가 설치
- 북부수도사업소에 간이 급수시설 설치 및 급수차량 지원 요청

□ 급식 지원

- “번동중학교” 와 “번동초등학교” “오현초등학교” 인근 음식점을 이재민 급식소로 지정하여 이재민 급식 지원
- “번동중학교” 와 “번동초등학교” “오현초등학교” 내에 임시 급식 시설 설치
- 대한적십자사봉사회, 새마을부녀회 협조를 받아 이재민 급식 지원
- 쌀, 부식 등은 구호물품 사전구매업체에서 구매하여 지원

□ 의료 및 방역서비스 실시

- 「의료지원반」 : 의료서비스 제공
 - 응급의료정보센터 비상근무체계 유지
 -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: 의사 9명, 간호사 9명, 행정요원 9명 동원
 - 관내 의료기관 및 의료용품 판매점을 통해 응급 약품 및 의료 소모품 확보
 - 사고현장 부상자는 119구급대가 대한병원, 서울현대병원, 한전병원으로 후송 조치
 - 이재민은 구호기간 동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책정하여 의료급여 실시

-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서 환자 발생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
- 「감염병관리반」 :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
 - 집중호우 및 침수지역은 주 2회 이상 방역소독 실시
 - 예방약품 및 방역소독약품 서울시에 긴급 지원 요청
 - 재해지역 하수구, 화장실 등 해충 서식처나 발생원에 정기적으로 살충·살균소독 실시
 - 고열 또는 설사환자 등 감염병 질환자는 발생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토록 홍보
- 「위생지도반」 : 위생지도
 - 집단급식소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식자재 등의 관능검사 강화
 - 수해지역에 식품위생감시원이 정기 순회하여 식중독 예방 홍보
 - 임시주거시설에 식품위생감시원 배치하여 급식 관리
 - 식수는 끓여서 제공하고 급수원은 잔류염소 0.4ppm 이상을 유지
 - 오염된 식기류 등은 세척 후 열탕소독 또는 살균소독제로 소독한 후 사용
 - 부패, 변질이 쉬운 음식물(도시락, 김밥, 햄버거 등) 제공을 금지하고 반드시 가열 처리한 음식물을 신속히 제공
- 장사의 지원
 - 사망자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사망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(유족)이 없을 경우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업체를 통하여 장사 지원

□ 피해 지원

- 서울시에 재해구호 기금 지급 요청
 - 사망자 : 세대주 1인당 1,000만원, 세대원 1인당 500만원
 - 신체장애 7급 이상 부상자 : 세대주 1인당 500만원, 세대원 250만원
 - 응급구호비 : 주택 반파이상 이재민 1인당 7천원 7일간 지원
 - 장기구호비
 - 주택 전파 이재민 1인당 7천원 53일간 지원
 - 주택 반파 이재민 1인당 7천원 23일간 지원
 - 세입자 보호 : 방이 파손되어 이사를 하여야하는 세입자에게 세대당

300만원 범위내 지원

○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의연금 지급 신청

- 사망자 : 세대주 1인당 1,000만원, 세대원 1인당 500만원
- 신체장애 7급 이상 부상자 : 세대주 1인당 500만원, 세대원 250만원
- 주택 전파 : 세대당 500만원
- 주택 반파 : 세대당 250만원